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년 12월 20일
- 나. 회부일자 : 2003년 12월 20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2003년 12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학 범)

(1) 제안이유

-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 자치단체가 당직시설 상태,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2) 주요골자

- 당직비 지급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당직비 지급 :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 재 영)

일·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는 실비보상적 경비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국가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2001년부터 1만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나, 국가와 지방은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획일적 기준계상은 실비변상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2004년도부터 달라지는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당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자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됨.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 등) ①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당직비 지급)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7조의2(당직비 지급)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p>